
V. 보험 모집 행위의 범위 확정

본 장에서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주요 기준을 제안해보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험 모집과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사례들에서 보험 모집 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

가. 고려사항

어떠한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이에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알선이라 함은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것, 중개라 함은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을 말하며,⁸³⁾ 그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상법상 중개 행위에 대한 해석론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인데,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상 중개라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교섭하여 그들 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8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조력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당사자 일방에게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를 한 경우에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모집 행위 규제의 취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험업법에서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보험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모집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경우에는 모집 자격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불완전 판매 방지”와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해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으로 모집 행위의 의미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 및 모집과 구분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규정의 내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규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모집 행위와 구분하고 있으므로(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 감독규정 제7-46조 및 제7-46조의2), 법규상 요건을 갖춘 비교·공시 행위의 경우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의하면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해당 조항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라는 것은 적어도 특정 보험계약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특정 보험을 전제하지 않은 단순한 소개나 고객 정보 제공 등의 경우에까지 모집 행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경우에는 모집 관련 규제를 실제로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 제안

요약하면, 어떠한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 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행위의 실질), 만약 해당 행위가 모집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규제의 필요성),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 및 모집과 구분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보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유형으로서 ①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②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③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앞서 판례에서도 보험 모집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보험 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 설명 행위와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등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들고 있는데⁸⁴⁾ 이와 유사한 입장이며(위 ① 및 ② 유형), 다만 앞의 두 가지 유형에 포섭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모집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모집의 핵심 개념 요소를 포함한 일반 규정 성격의 유형(위 ③ 유형)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유형 분류는 일본 금융청이 보험 모집 행위의 유형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를 목적으로 한 보험 상품의 내용 설명, 보험계약 신청의 수령, 기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는 보험계약 신청의 수령을 별도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제안한 ③ 유형, 즉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8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367 판결

한편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보험 상품, 또는 적어도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을 전제로 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앞서 제시한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나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특정 보험 상품이나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설명이나 권유라면, 거래의 상대방이나 거래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교섭하여 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NAIC 모델법에 의하면 보험의 판매권유에 대하여 특정 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a particular kind of insurance from a particular company)에 청약하도록 요청 또는 설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규제대상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영국 PERG상으로도 보험계약에 관한 조언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특정한 보험계약(a particular contract of insurance)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일정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아래에서는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각 유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1)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우선, 특정한 보험 상품에 대하여 계약 조건(보험료, 보장 범위, 지급 제한 조건 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계약 조건 등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등과는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호의 등으로 얘기해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으로 보험계약의 판매나 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집 행위로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의 설명 행위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작한 광고물(보험계약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을 단지 수동적으로 게시하기만 하는 경우라면 설명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보험업법규상 별도로 인정되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행위와도 구분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함에 있어서도 보험계약 내용에 관한 설명이 개입될 수 있겠으나, 보험업법규에서는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것도 허용하여 모집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서도 살핀바와 같이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함에 있어서는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만 비교·공시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객관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정책적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업법규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교·공시의 경우라면(일부 보험회사의 상품에 대해서만 비교·공시하는 경우 등)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따라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⁸⁵⁾

2)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다음으로, 어떠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계약 조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개입 행위로서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의 기회에 대해 논의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경우에, 이것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한 것

85) 비교·공시의 모집 해당 여부에 관련해서는 아래 2의 나.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함

으로서 보험 가입을 권유·유도하거나 촉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정보 제공이나 소개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실무적으로도 이 유형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개별적 행위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판단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통적인 대면 방식에서라면 이러한 구분 기준에 따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나, 온라인 방식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방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⁸⁶⁾

결국, 순수한 정보 제공이나 소개에 불과한 것인지 적극적인 보험계약 체결 권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의 발언이나 게시물의 내용 및 정도, 보험계약자 또는 잠재적 보험계약자와 행위자와의 관계, 보험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미친 영향,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행위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 모집 행위로서의 보험계약 체결 권유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특정 보험 상품이나 적어도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만약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권유라면(예: 당신에게는 화재보험이 필요하다, 또는 생명보험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내용),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86) 물론 온라인 방식의 경우라도 이용자와 1:1상담 등을 통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한다든가, 이용자에 대한 사전 질문 등을 통해 필터링을 하고 그에 따라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적극적·개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도 많을 것임

3)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이 유형에는 예를 들어 특정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청약서 등 신청 서류 작성에 대하여 설명해주거나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행위, 신청 서류를 수령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주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신청 서류 작성 등에 관여하는 것은 거래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라고 보여지며, 신청 서류 등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하여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일본에서는 보험계약 신청의 수령 행위를 별도의 모집 행위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 PERG에서도 잠재적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 및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 확인 및 수령 행위를 규제대상행위로서의 주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 사안별 분석

아래에서는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예시하고 각각의 경우 모집 해당 여부를 간단히 분석해보도록 한다.

가. 비교사이트 운영

최근 비교사이트가 가망고객 유입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보험 상품의 경우도 그러하다.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부합하는 다수의 보험 상품의 가격 비교 정보를 게시하고, 고객이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에 연결하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비교사이트의 경우 보험 모집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⁸⁷⁾

이와 관련하여, 만약 비교사이트 내에서 직접 보험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즉,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사이트 내에서 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이는 보험계약의 모집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보험업법규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에 대해 모집 행위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보험업법규에 따라 그 요건⁸⁸⁾을 갖추어 행해지는 비교·공시의 경우에는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비교사이트에서 비교 정보 및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의 사이트 링크만을 제공할 뿐 비교사이트 내에서 직접 보험계약의 체결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업법규에 따른 비교·공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보험협회를 통

87) 비교사이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보험 모집 해당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음. 영국의 경우 에그리게이터(Aggregator) 또는 가격비교사이트(Price Comparison Websites)라는 이름으로 보험시장에서 비교사이트가 활발히 이용되어 왔으며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비교사이트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비교사이트를 통한 보험 판매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앞서서도 살핀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규제대상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사이트와 관련해서도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조건들을 비교하는 경우 등을 규제대상행위로서의 주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나아가 비교사이트에서 특정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행위로서의 조언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일본에서도 모집 행위와 모집 관련 행위를 구분함에 있어 비교사이트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으며, 일본 금융청은 비교사이트에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로부터의 정보를 옮겨 신는 것에 그치는 경우라면 모집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모집 관련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에서 나아가 비교사이트에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로부터 보수를 받고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88)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3)

-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
-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 비교·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에 대한 내용을 비교·공시할 것

해 제공받은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사이트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일부 보험회사들의 상품에 대한 비교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비교사이트 운영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교사이트에서 순수하게 객관적·중립적인 비교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어서 나아가 특정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를 살펴서, 후자의 경우라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고객이 입력한 조건에 맞는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내용을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표시할 뿐이고 비교사이트 운영자의 주관이나 판단·의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형태라면, 이는 객관적·중립적인 정보 제공이지 특정 보험 상품의 추천이나 가입 권유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비교사이트 운영자의 주관이나 판단이 개입하여 특정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우선하는 듯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 보험 상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특정 보험 상품의 추천이나 가입 권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보험 상품들을 정렬을 하고 특정 상품을 우선하는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정렬 순서에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특정 보험 상품의 추천이나 가입 권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⁸⁹⁾ 비교 대상 보험 상품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예컨대 1~2개 상품을 비교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중립적인 정보 제공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특정 상품을 추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성격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비교사이트의 구성이나 게시 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집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비교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교사이트를 소개하고 링크만 게시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이는 장소 또는 수단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자체를 모집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89) 細田浩史(2016)

나. 지인 소개·추천

기존 보험계약자나 SNS 이용자 등이 지인을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에게 소개하거나,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에게 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인에게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특정인에 대해 보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개별적·적극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서도 지인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 행위에는 잠재적 보험계약자를 소개하거나 그에게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지인 소개·추천 행위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집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개·추천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만약 특정 보험 상품 또는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가 개입된다면 이는 보험 모집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설명 등이 전혀 없이 단순히 지인을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에게 소개하거나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에게 지인의 정보를 제공할 뿐이라면, 이는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예컨대 이벤트 등을 통해 가망고객의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⁹⁰⁾

다. 광고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서, 보험 모집 자격 없는 자가 하는 광고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만든 광고물을 단지 수동적으로 게시하는 정도라면

90) 일본 금융청도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을 하지 않고 잠재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할 뿐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집이 아닌 모집 관련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

모집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동적 게시만으로는 특정 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가입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광고 게시를 위한 수단만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직접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라면, 이는 모집과 마찬가지로 보아서, 위에서 살펴본 모집 행위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광고에 특정 보험 상품 또는 특정 보험 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 상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광고자의 주관이나 판단이 개입하여 특정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우선하는 듯한 표시를 하는 경우 등이라면 모집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특정 보험 상품의 내용이나 가입 권유 등의 내용 없이, 단순히 보험회사명이나 모집종사자명을 소개하고 링크를 게시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보험 모집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보험가입상황 진단 및 보험 추천 서비스

최근에는 플랫폼을 이용한 보험 관리 또는 보험 추천 서비스도 등장하였는데, 고객이 인증 절차를 거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그러한 보험 가입 상황을 진단하고 예를 들어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이용자와 비교하여 보장이 과도한 부분이나 중복 보장되고 있는 내용을 알려 주거나 보완이 필요한 보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이 활성화되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고객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 유형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보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만약 특정 보험 상품 또는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보험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정도라면 보험 모집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서 나아가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정도라면 보험 모집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추가 고려 사항

앞서 보험 모집 행위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주요 기준을 제안해 보았다.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이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법규나 감독당국의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반영된다면,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에 대한 정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감독당국 지침 또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방안,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여 보험업법상 정의 조항에서 모집의 핵심 개념 요소를 제시하고 감독당국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 상품이나 보험 모집 채널을 불문하고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험 모집 행위의 핵심 개념 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향후 모집 규제와 관련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 몇 마디 덧붙여보고자 한다.

우선 보험 모집 행위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구분에 대해 법규나 감독당국 지침 등으로 이를 정하고자 한다면, 일본에서 모집 관련 행위라는 개념을 신설한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보험 모집에 대한 정의 조항의 내용도 우리나라의 법 조항과 유사하며, 보험 모집의 유형도 우리나라의 판례와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다. 잠재고객의 발굴에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모집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행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정한 규율 대상으로 할 필요성은 있는 행위들이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 모집 관련 행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다루어,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 없는 제3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함에 있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점도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보험의 모집 또는 모집의 기회 제공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직접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행위들을 모집 관련

행위라는 개념으로 구분해내고, 우선은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측면에서 이를 적정히 관리·감독하도록 규율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 물론, 향후 모집 관련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모집 관련 행위나 모집 관련 행위자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조항이나 미국 뉴욕주 보험법 등의 경우처럼, 소개비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시적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행위의 실질을 따져야 할 것이며 그 행위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대가 산정의 방식 자체가 모집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목적이나(예컨대 보험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단순한 개인적 호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해당 행위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예컨대 단순한 정보 제공에 불과하였는지 이어서 나아가 해당 보험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적극적 권유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라면, 행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대가가 지급되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위 목적이나 실질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적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 권유에까지 이를 개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해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모집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거나 보험업법 제99조의 적용 범위를 모집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의 경우에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⁹¹⁾ 상담 또는 소개 등을 위탁함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의 명시적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밖에도 대면 방식과 온라인 방식에 있어 모집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⁹²⁾ 가격비교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공시의무 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

91) 이 경우 어떠한 행위가 모집 관련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음

안,⁹³⁾ 모집 자격 규제나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 위탁 금지 규제에 있어 영업성 또는 계속성·반복성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유지·관리 단계에서 모집 자격 있는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집이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모집의 개념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의 유지·관리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법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새로운 마케팅 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개념상으로는 모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정책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모집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⁹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92) 기존 유권해석에서는 모집과 광고를 구분함에 있어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개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서 기재한바와 같이 온라인 방식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행위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면 방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온라인 방식의 경우 게시물 자체의 내용과 방식, 구조 등을 토대로 행위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으며, 게시물 외의 추가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징도 있겠음. 따라서 소비자 등을 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대면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93) 예컨대 모집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고 단지 비교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일부 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비교 정보를 일정한 순서로 정렬하는 경우 그러한 순서의 근거를 밝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94) 예를 들어 영국에서 연계형 보험(Connected contract of insurance)에 대하여 예외사유로 인정한 사례,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s)에 대하여 면제 사유로 인정한 사례 등을 참고해볼 수 있겠음

참고문헌

- 성대규·안종민(2015), 『한국보험업법』, 두남
- 손주찬(2007), 『주식 상법(총칙·상행위)』,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성남(2017), 『보험모집규제론』, 마인드맵
- 이철송(2016),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 정찬형(2007), 『주식 금융법(II) 보험업법』,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채웅(2017), 『보험업법 해설』, 진한엠앤비
- 한기정(2017), 『보험법』, 박영사
- FCA(2018), “PERG 5 : Guidance on Insurance Mediation Activities”
- FSA(2011), “Guidance on the: Selling of General Insurance Policies through Price Comparison Websites”
- Kevin G. Fitzgerald, N. Wesley Strickland, Morgan J Tilleman(2012), “Survey of the Current Insurance Regulatory Environment for Affinity Marketing Arrangements”, *FORC Journal*, Vol. 23 Edition 4 - Winter 2012
- NAIC(2013), “State Licensing Handbook”
- _____(2005), “Producer Licensing Model Act”
- State of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2001), “Circulation Letter No. 5(2001)”
- 細田浩史(2016), 「保険募集」に関する新たな基準と「募集関連行為」概念の新設, 『保険学雑誌』, 第635号
- 若狭一行(2016), 「保険業法改正後における募集関連行為に関する諸論点-保険募集以外の事業を営む者との業務提携における着眼点-」, 『旬刊商事法務』, No.2106
- 金融庁(2017),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 金融審議会(2013), 『保険商品・サービスの提供等の在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 生命保険協会(2017), 『募集関連行為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日本損害保険協会(2017), 『募集コンプライアンスガイド』

부록.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전문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금융위원회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1. 13.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3. 11. 13. 원고 B에 대하여 한 임원 해임권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 회사의 2013. 3. 18. 기준 임직원 현황은 '임원 1명, 관리직원 2명, 소속 설계사 72명'이다.

나. 금융감독원장은 2013. 3.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문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회사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금융감독원장은 2013. 7. 4.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적발 사실을 이유로 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조치 등을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13. 원고 회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하였고, 같은 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그 임원인 원고 B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원고 회사 보험대리점은 2007. 8. 26.부터 2013. 2. 26.까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아닌 경기성남제일새마을금고 등 총 985개의 지역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동차보험가맹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5억 4,600만 원(수입수수료의 약 60%, 관련 계약: 36,820건)의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보험대리점 등록취소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8. 원고 회사의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 회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다수의 지역금고(이하 '새마을금고 등'이라고 한다)와 광고홍보 및 입점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새마을금고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사업장 내 홍보물을 비치하였으며, 지역금고 직원들은 보험상품의 가입희망의사를 나타낸 고객이 작성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등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전달하였으나, 그후 구체적인 보험가입 권유, 상품 설명, 보험계약체결 등의 모집행위는 모두 원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시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순한 광고 및 사실행위는 보험계약의 중국적인 체결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של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제재수단인 등록취소, 해임권고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사이의 보험대리점계약

원고 회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 등 9개의 보험 회사와 그 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보험상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보험모집을 하면 그 각 보험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모집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대리점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와 새마을금고 등의 계약 체결

가) 원고 회사는 2007. 7. 5. 새마을금고중앙회(2011. 3. 8.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변경됨)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광고홍보 및 입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은 2010. 7. 5.부터 2012. 7. 4.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가 2013. 7.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새마을금

고중앙회는 지역금고에 대하여 위 계약의 참여신청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다수의 지역금고와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새마을금고 등과 체결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광고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광고홍보 및 입점지원활동)

이 계약에 따른 광고홍보 및 입점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금고 등의 홈페이지(www.kfcc.co.kr)에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상품 관련 배너 게시
2. 새마을금고 등의 사업장 내 삼성화재의 포스터 등 광고물 게시
3. 새마을금고 등 임직원 및 회원에 홍보물 발송 및 안내(다만, 사전에 동의한 임직원 및 회원에 한한다)
4. 새마을금고 등에 입점(shop in shop)한 원고의 모집사용인에 대한 근무공간 제공과 통신헌명 이용 등 제반지원

제3조(광고홍보 및 입점비용)

원고는 제2조의 광고홍보 및 입점(shop in shop)에 따른 비용을 [붙임] 광고홍보 및 입점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 등에 지급한다.

[붙임] 광고홍보비 및 입점비용 지급기준

1. 광고홍보 및 입점비용의 지급

광고홍보 및 입점(shop in shop) 계약서 제4조에서 정한 광고홍보 및 입점비용은 아래의 제2항, 제3항에 따라 매월 새마을금고 등에 지급한다.

2. 월별 지급기준

가. 새마을금고 광고홍보비

- 수입대상 : 자동차보험 제휴사업 참여금고
- 수입기준 :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광고홍보에 의한 '새마을금고 자동차보험기초자료'의 작성 또는 가망고객의 추천으로 발생한 '보험계약체결 인정건수'를 기준으로 함.
- '보험계약체결 인정건수'라 함은 자동차보험의 평균 보험료 500,000원을 1건으로 환산 평가한 건수로 하며, 건수의 합은 소수점 첫 자리로 함.

구분	기준	광고홍보비	비고
자가용	보험계약체결 인정 건수	50,000원/건당	공동물건 제외
영업용	상동	20,000원/건당	상동

나. 새마을금고연합회

총 보험계약체결인정건수(=비사업용+사업용+공동물건 실적)×2,000원/건

3. 지급세칙

- 가. 광고홍보비 등에 대한 계산서는 연 1회 교부한다.
- 나. 지급시기: 매월 26일에 지급한다.

3) 보험모집의 단계 및 수수료 지급의 경위

가) 새마을금고 등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였고, 새마을금고 등의 사업장 내에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한 안내자료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일부 거점 지역금고는 해당 사업장에 입점한 원고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 공간, 통신 환경 등을 제공하였다.

나) 주로 공제사업 등을 담당하는 지역금고 직원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홍보행위로 인하여 금고의 고객이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하여 문의를 하면서 가입희망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또는 스스로 금고의 고객에게 이 사건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고객이 가입희망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또는 스스로 금고의 고객에게 이 사건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고객이 가입희망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자동차보험 기초자료 중 피보험자사항 및 차량사항',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원고 회사에 송부하였고, 해당 고객에게 원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별도로 연락하여 이 사건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안내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송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새마을금고 등에 그 직원이 송부한 '자동차보험 기초자료'와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건수를 실적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에 정한 광고홍보비 및 입점비용(이하 '이 사건 홍보비'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2007. 8. 26.부터 2013. 2. 26.까지 경기성남제일새마을금고 등 985개의 지역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급된 이 사건 홍보비는 15억 4,600만 원으로 이는 원고 회사의 수입수수료의 약 60%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새마을금고 등과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체결을 진행한 업무의 흐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험계약 체결과정	①	지역금고 직원이 금고 고객에게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하여 권유
	②	지역금고 등 직원이 가입희망고객에 대한 자동차보험 기초자료 및 정보 제공동의서 작성하여 그 자료를 원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공
	③	원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자료를 접수
	④	원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해당 고객과 계약상담을 하면서 비교견적 제공한 후 계약체결
	⑤	원고 회사가 위 자료에 근거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건수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통보
보험계약 체결 이후	⑥	원고 회사가 월별 실적 집계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통보
	⑦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홍보비 계산 후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통보
	⑧	원고 회사는 다음 달 26일에 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홍보비를 송금
	⑨	세금계산서 발행

4)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보험업법위반죄로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7. 2.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피의사실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은 공모하여, 2009. 6. ~ 2013. 2. 새마을금고는 보험업법상 보험모집 자격이 없음에도 985개 지역금고로 하여금 고객들의 '자동차보험 기초자료'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삼성화재 보험대리점인 원고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원고 회사의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원고 회사로부터 합계 29억여 원을 수수하였다.

□ 불기소 이유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은 새마을금고 고객들로부터 원고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정도에 불과하여 보험 모집행위로서 범위가 약한 점, 본건에 따른 개별 지역금고의 수익은 약 4년간 합계 200만 원대에 불과한 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원고 회사와의 본건 업무제휴관계를 청산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를 한다.

5) 새마을금고 등의 이 사건 홍보비 사용처 관련

증인 C는 2008.경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범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홍보비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 새마을금고 등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홍보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금고 수익으로 계산을 하고, 그것을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일부 금고는 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보험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홍보비는 '모집에 관하여 지급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①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는 보험의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를 말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의 대리란 '보험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보험자를 위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②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만 보험모집을 하게 하여 보험의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고, 나아가 다단계판매와 같이 보험을 매집하는 자를 따로 두고 수수료를 복수의 모집인이 나누어 가짐으로서 사실상 보험수수료 상승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여, 종합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 보험의 모집과정: 보험상품이 고객에게 판매되는 보험모집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모집종사자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과 접촉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② 보험가입의사를 표시한 고객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 판매에 필요한 고객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등의 보험계약을 설계한다. ③ 고객으로부터 보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의한 보험계약내용을 설명한 후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다. ④ 보험계약청약서를 보험계약 심사부서에 송부하고 보험계약 심사부서는 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그 후 고객에게 보험증권을 발송한다.

다) 모집행위의 판단기준 및 해당행위: ① 어떠한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② 보험 모집행위에는 앞서 본 과정과 같이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등 '보험계약의 유인 행위'와 '보험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 설명'(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약관 등에 대한 내용 설명, 보험계약 청약서의 내용 및 기재사항 설명, 보험료의 산출과정 및 내용 설명,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설명)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그중 권유행위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가입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사업장 내 홍보물을 비치하였다. 나아가 지역금고 직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홍보행위로 인하여 관심을 가진 금고의 고객이 보험상품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 가입희망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또는 스스로 금고의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그 고객이 가입희망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자동차보험 기초자료 중 피보험자사항 및 차량사항',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고객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원고 회사에 제공하였다. ① 이러한 행위 내용과 보험 모집 과정에 비추어 보면, 새마을금고 등은 보험 모집 자격을 가진 원고와 상호 협력하여 자동차보험의 구체적인 상품설명 및 상품설계과정을 제외한 권유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 등이 모집행위의 구성요소인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설명 및 그 설계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유행위 등 모집의 다른 구성요소를 갖춘 이상 이를 모집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특히 보험상품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집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모집이 모두 모집행위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된다. ② 보험의 '모집'이라 함은 통상 보험모집의 본질적인 요소인 보험계약자의 유치를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험 모집행위 전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등과 원고 회사의 내부적인 역할분담이 있었지만, 잠재고객 발굴의 역할을 새마을금고 등이 담당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의무보험이어서 새마을금고 등의 역할은 보험 모집과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점, 보험계약자가 처음으로 접하는 자가 새마을금고 등이고 자동차보험 기초자료 양식에 새마을금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마을금고 등도 원고 회사와 동등하게 모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마을금고 등이 보험 상품설명 및 설계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보조행위가 아닌 공동모집으로서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③ 다만, 이 사건 계약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보험상품의 배너광고 부분은 잠재적인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행위에 불과하여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자체는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지역금고 직원이 한 권유행위 등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앞서 본 이유로 모집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들이 직접 고객에 대하여 보험상품의 권유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하였는바, 앞서 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담당할 역할 내지 업무 역시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마) 이 사건 홍보비의 성격: 앞서 본 새마을금고 등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① 원고가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홍보비로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기준이 오로지 새마을금고 등 직원들에 의한 보험계약체결 인정건수이고, 그에 따라 홍보비가 산정된 점(원고 회사의 실제 매출의 약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홍보비로 지급되었다), ② 새마을금고 등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홍보비를 그 직원들의 성과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외형상으로는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홍보비 지급형식을 취하였지만 원고 회사가 새마을금고 등에 지급한 홍보비 명목의 돈은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 등이 다른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준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홍보비는 새마을금고 등의 모집행위에 대한 수수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모집에 관하여'의 의미: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은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집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모집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 역시 위 조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새마을금고 등이 담당한 행위(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 직원들이 직접 금고 고객에 대하여 권유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가 모집행위 그 자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모집에 관련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 대가로 이 사건 홍보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보험법 제99조 제2항에서 정한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험 모집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참조). 이때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

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한편, 원고 B에 대한 해임권고 처분은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징계권자는 아니나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인 점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약 5년 6개월 동안 보험모집의 자격이 없는 새마을금고 등에게 보험모집행위를 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새마을금고 등에 15억 4,600만 원(수입수수료의 약 60%에 해당)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위반의 횡수와 위반의 실태를 볼 때 위반행위가 단체적, 대량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보험대리점 등록취소처분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행위별 제재양정기준에 따라 처분사유와 관련된 수당 등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제재양정기준 등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보험모집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액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9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를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중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태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량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080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5 / cbyun@kiri.or.kr)

저 자 약 력

백영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연수원(31기) 수료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센터장
(E-mail : pyh@kiri.or.kr)

손민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연구원
(E-mail : sms27@kiri.or.kr)

연구보고서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94-7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